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92
----------	-------

발의연월일 : 2023. 12. 11.

발 의 자 : 이만희·유의동·박정하
구자근·이주환·유상범
조해진·조명희·권명호
양금희·이채익·김희곤
이용호 의원(13인)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과도한 인파 밀집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제4항제1호의 피해자 보상 분과위원회에서 배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9조).

타.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

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파.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하.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3조).

거.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시설을 국가 및 피해자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너. 법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피해자 지원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1조).

더.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32조).

러.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

머.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버.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41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43조).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10·29이

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피해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등

제1절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와 관

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피해자 보상 분과위원회

2.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보상 분과위원회에서는 제7조에 따른 배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배상금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제4항제1호의 피해자 보상 분과위원회에서 배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

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③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4조의 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배상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제1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8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피해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

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손실의 보상 등) ①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10·29이태원참사와 제1항, 제2항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로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10조 및 제11조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심의) ① 제14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절 피해자 지원 등

제19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근로자의 치유희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희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희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희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희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희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근로자의 치유희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희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체 회복 및 추모위원회 등

제1절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29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피해자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특례)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2절 추모위원회 등

제32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비의 건립

제33조(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이 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지 못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추모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

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36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8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

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추모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